

제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글로벌 공기업

치명강한대신*
다양한 JTO

제주관광공사 산업안전보건 규정

2023. 1.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제주관광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관광공사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현업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제주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장”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① 사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사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자)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고 영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사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사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위원회를 구성하되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9에 의거하여 근로자 수 따라 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대체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각 6명씩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사장 및 사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노사 각 1명씩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은 “제주관광공사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의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있는 사람이 실시한다.

제17조(직무교육)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5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사장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제20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기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나 가스와 관계되는 작업은 감전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등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인증) 사장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검사) 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①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인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 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을 작성 및 해당 작업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표지)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의 작업중지 조치는 도지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4. 안전교육훈련
5. 사고원인 조사 및 그 대책 수립
6.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및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8. 안전 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9.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안전순찰)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순찰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안전기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31조(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장의 부문별 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도지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인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유해물질 표시)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36조(보호구) ① 사장은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37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사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사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9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0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 기관에 알리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고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사장은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알리고, 관리감독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문서보존연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4조(규정의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